##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27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서범수・김소희・장동혁

이헌승 · 이양수 · 윤영석

최보유 • 김승수 • 박충권

서일준 • 이인선 • 고동진

박정하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현재 시공단계 위주의 감리업무와 단순한 지원업무만을 수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설계·시공 단계에서만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이 설계 전부터의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주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신공항과 같은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건설사업관리 외에도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 건설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역할이 필요하나, 발주청이 이를 도입 및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 법률 제 호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설계용역"을 "계획 및 설계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3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 ①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이하 이 조에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다.
- ⑧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③		
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	<u>계획 및 설계용역</u>		
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			
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건		
	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이하		
	이 조에서 "종합적 사업관리 용		
	역"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		
	<u>다.</u>		
<u> &lt;신 설&gt;</u>	⑧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		
	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		
	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u>야 한다.</u>		
⑦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u>⑨</u>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			
터 <u>제3항</u> 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	<u>제3항까지, 제7항 및 제8항</u> -		
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현	
다.	